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과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 온실가스 배출저감 설비 설치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중견 환경기업 및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 * 환경기업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 요강」 제3조(용어의 정리) 제3호 해당 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분야		지원대상
환경산업	시설설치 자금	중소·중견 환경기업
	성장기반 자금	
녹색전환	오염방지 시설자금	중소·중견 기업 (환경기업 포함)
	온실가스 배출저감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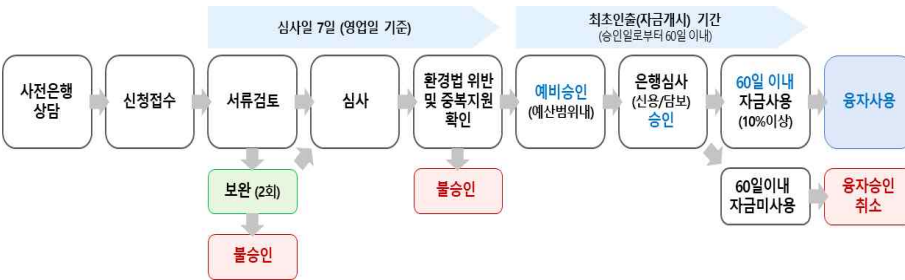
○ 융자 조건

사업명	분야	구분	세부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	대출금리
미래환경 산업육성 융자	환경 산업	시설	시설설치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100억원	분기 변동금리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10억원	
	녹색 전환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300억원	분기 고정금리
		시설	온실가스 배출저감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100억원	분기 변동금리

○ 세부 내용 및 사용용도

분야	구분	세부분야	사용용도
환경 산업	시설	시설설치 자금	• 시설·장치 구매비 : 설비/장치의 제작·설치·구매와 관련 토목공사 비용 • 건축비 : 공장·사무동·기숙사 등 신축·확장·매입 및 관련 토목공사 비용 • 차량·운반구 : 화물차, 지게차, 중장비 등 운반 장비의 구매·개조·주문 제작 비용 지원 (부가 비용 제외) • 해외사업장 : 해외 현지 공장의 설치 및 건축 비용(국내 동일기준 적용) • 중고 구매 : 중고 설비·차량·건축물 구매 비용
	운전	성장기반 자금	• 인건비 : 사업장 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 생산비 : 원재료, 설비 수리비, 소모성 부품비 등 생산활동 관련 • 판촉영업비 : 전시회 참가비, 쇼핑몰 운영비, 광고·홍보비 등 • 차량운반구 : 사업자 소유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유지비용 • 가동비용 : 생산 공정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가스비, 연료비 지원 • 해외사업소 : 해외 파견 인건비 및 사무소 임차료 등 운영 관련 비용 • 기타 비용 : 임차료, 포장·운송비, 환경기술 도입 및 인증 관련 비용
녹색 전환	시설	오염방지 시설자금	• 부대설비 및 공사비용 : 환경시설과 직접 연결된 후드·덕트·파이프, 운전·조작 기기, 필수 토목·건축공사 비용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약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자금
	시설	온실가스 배출저감 자금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온실가스 감축, 순환 경제) 경제활동 * 에너지 효율 향상, 폐열·압력 회수, 연료 전환, 공정 개선, 온실가스 포집·처리,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순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와 활동

○ 지원절차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안내



☑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환경산업, 총 2,000억원) 중소·중견환경산업체 성장 지원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규모	대출기간/지원한도	금리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시설설치자금	1,00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10년)/100억원	변동금리 금리1.41%(2025년 3분기 기준)
	성장기반자금	1,000억원	2년 거치 3년 상환(5년)/10억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녹색전환, 총 2,600억원)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저감시설 지원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규모	대출기간/지원한도	금리
비영리법인* *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 자금	1,20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10년)/100억원	변동금리 금리1~1.41%(2025년 3분기 기준)
	오염방지시설자금	1,40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10년)/300억원	고정금리 금리1.41%(2025년 3분기 기준)

* 융자금 지원 조건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결 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 정책자금 융자 운용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항목

- ◆ 토지 및 부지 매입비
- ◆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수입인자·증지비용
- ◆ 수익목적(임대, 매각 등)의 시설
- ◆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 지원 제외

📄 공동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향후 신용평가 여신심사를 하고, 융자금을 취급할 은행 영업점, 신청자가 선택)
서약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융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기업규모 확인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우선지원 순위 평가 항목에 따라 기타 해당 서류

시설설치자금 제출 서류

- ◆ 융자요강 제3조 제3호의 환경산업체에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제시자료
- ◆ 장치, 시설 시공·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기성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기성품 구매 시, 사양서, 브로셔, 팜플렛)
- ◆ 시설·장비·건축세부 도면
- ◆ 건축 허가서(건축비 융자 신청시 필수)
-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성장기반자금 제출 서류

- ◆ 융자요강 제3조 제3호의 환경산업체에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제시자료
- ◆ 사업장 운영자금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해당 업체만 제출)
- ◆ 기타 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 관련 내역 서류 ※ 해당 자금 신청 시 제출

오염방지시설자금 제출 서류

- ◆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기성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기성 제품 구매 포함)
- ◆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 건축허가서
-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제출 서류

- ◆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
- ◆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기성 제품 구매 포함)
- ◆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 고효율 장치 인증서
- ◆ 계량기, 계측기 설치사진
- ◆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증빙 자료

🔔 용자내용



지원분야	지원범위
시설설치자금	◆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7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 2024년 10월 1일 이후 착공(또는 착수)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 *또는 진행중인 장치화 시설 *미완공: 준공, 가동개시, 사용승인 등의 전 단계 또는 제작·공사 진행 중인 장치화 시설물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용자승인액 200억원이상, 시설설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1일로 적용
오염방지시설자금	◆ 접수일이 속한 월부터 융자금 사용기간 만료일 이내에 사용되는 자금

🔔 자금별 문의처

-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 **032-540-2215**
- ◆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 **032-540-2220**
- ◆ 성장기반자금 : **032-540-2218**

